

정부학연구소 규정

1988.2.3. 제정
1990.9.1. 개정
1998.7.1. 개정
1999.2.1. 개정
2004.10.22. 개정
2007.10.16. 개정
2019.06.03. 개정
2019.10.07. 개정
2021.06.11. 개정
2022.04.03. 개정
2023.01.02. 개정
2023.02.28. 개정
2024.05.01. 개정
2025.05.01. 개정
2025.11.20. 개정

<정부학연구소, 연구진흥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 부설 정부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 이하 연구소라 함)로 한다.

제2조(소재지) 이 연구소는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이 연구소는 정부와 공공영역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공공영역의 중요 논제에 관한 연구
2. 연구논문 및 간행물 발행
3. 강연회, 연구발표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
4. 전문상담, 자문, 분석 및 기술지도
5. 국내외 대학,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과의 인적 및 물적 교류
6. 연구자료의 수집
7. 회원제의 설치·운영
8. 기타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구성과 기구

제5조(기구)

① 이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1. 평의원회
2. 공공관리연구센터
3. 방법론연구센터
4. DX재난안전교육연구센터
5. 도시미래연구센터
6. 혁신정책연구센터
7. 국정설계연구센터
8. 공공 빅데이터 AI 연구센터
9. 공공혁신산학센터
10. 입법정책연구센터 <신설 2025. 11. 20.>
11. 「정부학연구」 편집위원회
12. 사무국
13. 운영위원회

② 이 연구소에는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분야별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이 연구소에는 소장, 편집위원장, 각 연구센터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연구센터)

- ① 공공관리연구센터는 행정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며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② 방법론연구센터는 정부 및 공공문제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조사설계와 표본설계, 자료수집과 통계분석 및 자료보관과 배포를 담당한다.
- ③ DX재난안전교육연구센터는 재난안전분야 고위관리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재난안전최고위과정”을 직접 운영한다.
- ④ 도시미래연구센터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 및 지역들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⑤ 혁신정책연구센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 디지털 혁신정책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고찰하고 전환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⑥ 국정설계연구센터는 국민 개개인의 풍요롭고 수준 높은 공공적 삶 구현을 위한 행정 체제 및 제도 설계 연구를 수행한다.
- ⑦ 공공 빅데이터 AI 연구센터는 공공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략적 방법을 모색하고, 증거 기반 정책 수립 및 행정 혁신을 위한 세부 모형을 개발한다.
- ⑧ 공공혁신산학센터는 공공부문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과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 개발, 공직자 및 전문가 교육을 통해 공공 행정의 실용적 발전을 도모한다.
- ⑨ 입법정책연구센터는 법제 개선과 공공정책 혁신을 위한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신설 2025. 11. 20.>

제7조(평의원) 평의원은 본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전체 전임교원으로 한다.

제8조(소장)

- ① 소장은 평의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제9조(연구센터장)

- ① 연구센터장은 평의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 ② 연구센터장은 각 연구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고문) 소장은 이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임기) 소장 및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연구원 구분과 임용)

- ① 이 연구소에 소속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원은 연구위원, 초청연구위원,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단, 근무환경에 따라 상임, 비상임, 방문으로 구분한다.
- ② 연구위원은 평의원으로 한다.
- ③ 초청연구위원은 연구업적 및 사회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추천하고 평의원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 ④ 초청연구위원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⑤ 연구교수는 소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⑥ 연구교수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제5장 제11절에 의거하여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재임용이 가능하다.
- ⑦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자 중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⑧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13조(사무국)

- ① 사무국은 연구소의 행정사무를 수행하며, 간사와 직원은 소장이 임명한다.
- ② 이 연구소에 소속하여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은 연구간사, 편집간사로 구분한다.

제3장 위원회

제14조(평의원회)

-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②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운영 방침과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규정 개정 및 세부규칙 제정
 4.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③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고려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운영 규정」 제8조(연구기관별 운영위원회)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15조(「정부학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은 평의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한다.

제16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편집위원장, 각 연구센터장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연구센터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장 재 정

제17조(경비)

① 이 연구소의 경비는 본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연구조성금, 외부기관의 찬조 및 기부금, 연구용역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이 연구소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특별기금을 둘 수 있다.

③ 특별기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회계연도) 이 연구소는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익년도의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전년도의 결산서 와 사업계획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 이 연구소의 수입, 지출은 연 1회 이상 본교 「감사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에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

제5장 규정 개정과 준용

제22조(규정 개정 등) 이 연구소의 규정 개정,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고려대학교 「부설연구기관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조, 제4조 1호, 제5조3,4,5호 내용수정및 신설, 제6조 ②항신설, 제16조 내용수정).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3항 신설, 제12조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조, 제12조 제1항 및 제5항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전부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0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조 제3항 및 제7항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1항 개정, 제6조 제1항 삭제 및 제5항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및 제6조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및 제6조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및 제6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및 제6조 개정)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및 제6조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및 제6조 개정)